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 근거 마련 〉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6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신영대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2025. 4. 23.
3. 회부연월일: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Ⅲ. 검토의견

□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생략)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직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의 해제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 ----- ----- ----- ----- -----.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비위행위 조사·수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¹⁾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이는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능력을 회복하거나 재판·수사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1)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 *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사립학교경영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 제외) 또는 사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표 1]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조항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직위해제는 임용의 한 종류에 포함²⁾되어 임용권자가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직위해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할청³⁾이 임용권자에게

2)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교원의 직위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 관할청에 의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도록 보완될 것으로 보임.

다만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이하 같음)의 관계에서,⁴⁾ 관할청의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권이 행사되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관할청에 의해 학교법인의 임용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할청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과 관할청에 의해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임용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5헌바29, 1997.12.2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 2005헌가7, 2006.2.23.)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를 요구하여 비위교원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직위해제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의 제도로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임용권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제도의 입법목적에 맞게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헌재 2004.1.29. 2004헌바12),
-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가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고, 관할청이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장학 등 임용권자의 인사권한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견없음

-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와 내용에 이견 없으며 원안 동의함.
- ※ 다만 관내 일부 사립학교법인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별도로 기재함.
: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권을 신설하고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인사 자율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며,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과잉 입법임. 이러한 개정안이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를 함께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각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기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상위기관에서 직위해제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사립학교법만 특별하게 개정해야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관할청과 임용권자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 판단됨.
-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 면에서 모호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할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부족함.

○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 신중검토

- 사학의 교원 인사권은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본질적으로 귀속된 권한인데, 관할청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적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사립 교원의 '사적 계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서 사학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임.
-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 내지 침해하는 입법이 누적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인 다양성과 창의성, 교육철학의 자율 실현 가능성 자체가 침해받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획일화, 공공성만을 강조한 형식적 규제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9